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48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510567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redacted]도는 183,448,770원, 피고 [redacted]국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8,920,7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결청의 결정은 추징처분 요건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이 되는데, 합병, 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결정이 재결청에 의해 이루어져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②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항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이 사안의 구체적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원고로부터 분할된 D가 포괄승계 후에도 여전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redacted]시가 세무조사까지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시정 권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결청의 결정 역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결청의 결정을 최종적인 법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행정안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매각, 증여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 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 부과에 관한 사안이지만,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이전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하는 사유로서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